<u>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</u>(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)

종 류	평 가 항 목
종합평가	1.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
	2.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
	가.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
	나. 폭발성·물반응성·자기반응성·자기발열성 물질, 자연발화 성 액체·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
	다.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
	라. 추락, 붕괴, 낙하,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
	마. 그 밖에 기계·기구·설비·장치·구축물·시설물·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
	바.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,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・습도・환기・소음・진동・분진,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
	3. 보호구, 안전·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
	4. 유해물질의 사용·보관·저장,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,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
	가.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
	나.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	다.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에 관한 사항 등
	5.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
	가. 안전보건관리체제(안전·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)
	나. 건강검진 현황(신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등)
	다.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
	6.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·증진 등 보건관리 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안전평가	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,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, 제3호 중 안전 관련 사항, 제5호의 사항
보건평가	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, 제2호바목의 사항, 제3호 중 보

** 비고: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, 최종 의견('적정', '조건부 적정', '부적정' 등)을 첨부해야 한다.